

# 보험금 청구서

【우편접수처】

(150-9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1 흥국생명빌딩 3층  
사고보험금 접수센터 (TEL.1588-2288)



◆ 인적사항

청구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망 <input type="checkbox"/> 재해사망 <input type="checkbox"/> 장해 <input type="checkbox"/> 진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입원·수술 <input type="checkbox"/> 실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접수경로	<input type="checkbox"/> 방문접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접수 <input type="checkbox"/> 설계사 대행접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고자 (피보험자)	성명	홍길동		직장명	흥국생명	
	주민번호	123456-1234567		하시느일	사무업무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1				
	휴대전화	010-2002-7999		이메일	hongkildong@heungkuklife.co.kr	
보험금 수령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은행송금 (통장사본 첨부)				계좌개설일	2013.01.01
	은행명	국민	계좌번호	012-01-0123-981		예금주
수익자	(신청인이 수익자인 경우 기재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성명	주소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및 심사결과를 문자메세지 통해 안내드리는 것에 동의하며, 문자메세지 안내를 신청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접수증 및 보험금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조회/제공에 대한 확인 후 동의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확한 보험금액 산정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및 제3자 의사의 소견이 필요시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상 보장계약 안내, 담당자 연락처, 지급예정일, 보험금 청구서류 및 간소화 서류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 청구서상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품별 보장금액, 보장기준 등에 대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 보험증권 미보유시 보험증권 재발급이 가능함을 설명 받았습니다.

2013 년 3 월 3 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small>홍길동</small>	사고자와의 관계	본인	자택 ☎	02-2002-7000
	주민번호	123456-1234567			직장 ☎	02-2002-200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1				
	휴대전화	010-2002-7999	이메일	hongkildong@heungkuklife.co.kr		

본인내방여부  본인    대리인      지급설명서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 청구세부내용

청구사유 발생원인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재해) 사고내용	사고일자	2013 년 03 월 01 일 14 시				
	사고장소	영등포 사거리				
	사고경위 (상세하게)	(교통사고)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 재해사실 입증서류(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지급결의서 등) 제출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타사 가입여부	○ 보험회사 : 한국생명, 흥국화재				○ 가입건수 : 2건	
	○ 실손가입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담당자성명		흥국생명		전화/FAX	
접수자성명	(서명)	접수지점		전화	

○ 보험금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불이익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당사 보험사고 특별조사팀(02-2008-7563)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합니다.  
 ○ 우편접수시 보험금 청구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  
 ○ 보험금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우편접수처】

(150-9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1 흥국생명빌딩 3층  
사고보험금 접수센터 (TEL.1588-2288)



◆ 인적사항

청구사항	<input type="checkbox"/> 일반사망 <input type="checkbox"/> 재해사망 <input type="checkbox"/> 장해 <input type="checkbox"/> 진단 <input type="checkbox"/> 입원·수술 <input type="checkbox"/> 실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접수경로	<input type="checkbox"/> 방문접수 <input type="checkbox"/> 우편접수 <input type="checkbox"/> 설계사 대행접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고자 (피보험자)	성명			직장명		
	주민번호			하시는일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보험금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은행송금 (통장사본 첨부)				계좌개설일	
	은행명			계좌번호		
수익자	(신청인이 수익자인 경우 기재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성명			주소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진행상황 및 심사결과를 문자메세지 통해 안내드리는 것에 동의하며, 문자메세지 안내를 신청합니다.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접수증 및 보험금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조회/제공에 대한 확인 후 동의합니다.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확한 보험금액 산정을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및 제3자 의사의 소견이 필요시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 ※ 보험금 청구서상 보장계약 안내, 담당자 연락처, 지급예정일, 보험금 청구서류 및 간소화 서류에 대하여 설명 받았습니다.
  - ※ 청구서상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품별 보장금액, 보장기준 등에 대하여 안내 받았습니다.
  - ※ 보험증권 미보유시 보험증권 재발급이 가능함을 설명 받았습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사고자와의		
	주민번호			관계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본인내방여부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지급설명서	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 청구세부내용

청구사유 발생원인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재해) 사고내용	사고일자	년    월    일    시				
	사고장소					
	사고경위 (상세하게)	※ 재해사실 입증서류(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지급결의서 등) 제출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타사 가입여부		○ 보험회사 :		○ 가입건수 :		
		○ 실손가입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담당자성명		흥국생명		전화/FAX	
접수자성명	(서명)	접수지점		전화	

- 보험금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불이익 및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조작, 피해과장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실을 당사 보험사고 특별조사팀(02-2008-7563)으로 제보하여 주시면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합니다.
- 우편접수시 보험금 청구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바랍니다.
- 보험금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흥국생명보험회사 귀중

### 【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 처리 및 동의거부에 관한 안내**  
정보동의시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치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신분증진위여부확인(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 등에 조회)

####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지급계좌 및 금융기관명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조회회사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등)가 수집·가공한 정보(개인식별정보, 신용정보,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를 가공한 정보 등), 실명여부

#### ■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실명확인

#### ■ 조회하는 자 : 귀사(흥국생명), 귀사로부터 보험금지급심사 위탁받은 자

#### ■ 조회동의 유효 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회사
- 공공기관 등 :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주)티시스·위탁 콜센터, 전산유지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편물용역업체 등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신용정보회사 : 당사 요청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자 식별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heungkuklif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질병·상해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증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질병·상해정보 처리 (피보험자의 경우)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운전면허증번호 · 여권번호 처리	동의함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피보험자	성명 : _____	서명 : _____
수익자	성명 : _____	서명 : _____
친권자 (후견인)	성명 : _____	서명 : _____
	성명 : _____	서명 : _____

- ※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피보험자란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익자 전원 서명 부탁드립니다.
- ※ 계약관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서명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각자 서명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부모 공동 명의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 (대리인)	성명 : _____	서명 : _____
--------------	------------	------------

##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등의 지급) ③항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30조 ①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등의 지급) ④항에 의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등의 지급) ②항에 의거 지급기일(조사시 10일)내 미지급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보험의 이자계산법에 의한 소정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 3. 주소변경 통지

○ 표준약관 제25조(주소변경통지)에 의거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4. 보험금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 표준약관 제20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5.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지급(비례분담 적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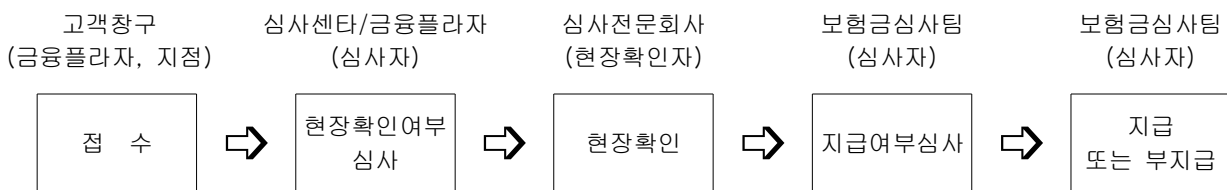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분담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분담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주요 안내 내용

1. 보험금 청구권자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을 청구하신 경우 흥국생명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황 및 지급내역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heungkuklife.co.kr](http://www.heungkuklife.co.kr))
3. 사고보험금 청구시 처리 진행 과정등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사고보험금의 지급 예정일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통상 3영업일 이내이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10~20영업일 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사고보험금 접수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초과 비조사 지급건에 대한 담당 손해사정사는 이수근 손해사정사입니다.(02-2002-7587)
6. 장해급여금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한 재진단 및 의료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7.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결정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흥국생명 민원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담당 : 02-2002-7587 / 755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심사를 위해 타보험사에 보험계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수익자 통장 계좌번호 포함)</li> <li>- 청구인 신분증 사본</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추가서류</li> <li>-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 style="padding-left: 20px;">*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li> <li>-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li>-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 (표 아래 참고)</li> </ul>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망자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li>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구)제적등본 등</li> <li>-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 (회사양식),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인 전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ul>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li> <li>-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li> </ul>
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통원확인서(통원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b>진단명, 통원일자 및 기간</b>이 포함된 서류</li> <li>[단, 3만원 이하 <b>실손의료보험</b>의 경우 (산부인과, 향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같음]</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추가</li> </ul>
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유장애진단서</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전 당사 콜센터(1588-2288) 또는 접수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li> <li>·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li> <li>· 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li> <li>·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li> </ul> </li> </ul>

구분		구비서류
진단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암	· (암진단 확진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대체검사결과지(MRI, CT, 방사선판독지 등) ※ 혈액암 (골수검사결과지)
	뇌졸중	· 정밀검사결과지 (CT, MRI 등)
	급성심근경색	· 심전도 검사결과지,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지, 혈액(효소)검사결과지
골절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b>진단명</b> 이 포함된 서류	
수술	-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b>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b> 가 포함된 서류	
태아보험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유산/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응급비용	- 119구급구조증명서(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 및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재해 입증서류 >

1.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사단장급 의무대대 발급서류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